기혼자아파트 입주연장 신청서

결재	담 당	팀 장	처 장

성 명	학 번	학 과	과 정	입주호실	입주기간	연장신청일	연 락 처
							연구실 :
							핸드폰 :

※ 사유 :

위와 같이 기혼자아파트 입주연장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준수사항】

1. 아파트의 입주 기간은 기혼자아파트운영지침 제17조(입주기간)의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8학기를 원칙으로 하며, 여유세대가 있을 경우 1학기 단위로 최대 4학기까지 연장거주 할 수 있음. 또한, 기혼자아파트 운영지침 제22조(입주 보증금 징수)3호에 의거, 퇴거를 지시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하지 않을 경우 입주 보증금은 관리비로 귀속되어 반환하지 않는다.
2. 연장 입주 후 졸업, 휴학(2학기이상), 제적 등으로 입주자격이 소멸된 자는 즉시 퇴거하여야 함.
3. 타인에게 사용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금함.(적발시는 즉시 퇴거하여야 하며, 또한 본원에서 제공하는 모든 생활관 관련 수혜대상에서 제외됨)
4. 각종 집기, 시설물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는 입주자가 변상함.
5. 도박, 고성방가 등 기타 학생의 신분에 위배되거나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함.

광주과학기술원 교학처장 귀하

Application for Graduate Residence Extension

(입주연장 신청서)

Approval	Staff	Section Manager	Dean

Name	Student ID	Dept.	Program	Room No.	Residency Period	Extension Application Date	Contact Information
							Lab :
							Mobile :

* Reason for Extension :

Please approve this request for an extension of graduate dormitory residency.

20 Year Month Day

Applicant: (Signature)

【Compliance Issues】

1. In accordance with Article 17 of the Apartment Regulation, the residence period is 4 semesters for M. S. students and 8 semesters for Ph. D. students. It is possible to extend residency up to 4 semesters by the semester if a vacant apartment is available. In accordance with Article 22 of the Apartment Regulation, if the resident does not move out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checkout notice, deposit will not be refunded.
2. As for any person whose residency has expired due to graduation, leave of absence(2 semesters or more), expulsion and etc., the resident must immediately leave the apartment.
3. Do not allow any unauthorized person to live in the apartment. If the resident is caught doing so, the resident must leave immediately, and will no longer be eligible for residency in the on-campus housing.
4. Residents must reimburse GIST for any deliberate or negligent loss or damage to property.
5. Do not gamble or engage in any activity that is harmful to other students or that is in violation of community standards.

Attn.: Dean of Academic & Stuent Affairs/GIST

기혼자아파트 입주연장 신청서 (입주자격 소멸자용)

결재	담 당	팀 장	처 장

성 명	학 번	학 과	과 정	입주호실	입주기간	연장신청일	연 락 처
							연구실 :
							핸드폰 :

※ 사유 :

위와 같이 기혼자아파트 입주연장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준수사항】

1. 입주자격소멸자란 기혼자아파트운영지침 제17조(입주기간)의 최대입주기간을 초과한 자를 말함.
2. 아파트의 입주 기간은 기혼자아파트운영지침 제17조(입주기간)의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8학기를 원칙으로 하며, 여유세대가 있을 경우 1학기 단위로 최대 4학기까지 연장거주 할 수 있음. 또한, 기혼자아파트 운영지침 제22조(입주 보증금 징수)3호에 의거, 퇴거를 지시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하지 않을 경우 입주 보증금은 관리비로 귀속되어 반환하지 않는다.
3. 퇴거와 관련하여 관리부서의 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함.
4. 입주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임시 입주임.
5. 각종 집기, 시설물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는 입주자가 변상함.
6. 도박, 고성방가 등 기타 학생의 신분에 위배되거나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함.

광주과학기술원 교학처장 귀하